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2. 10.

(주)이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8집단4141)

### ■ 위반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업종코드 : 715)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3.8.1일자로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전환된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이다.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이수건설 주식회사, 이수시스템 주식회사, 이수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등 4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 자회사들은 주식회사 에어필드, 주식회사 이수유비케어, 주식회사 이수유화, 이수엠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수엑사보드 등 5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7.12.31일 현재 부채총액이 163,509백만 원으로서 자본총액 22,899백만 원의 7.14배에 달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직전 사업연도인 2006.12.31일 기준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의 부채총액은 90,047억 원으로, 자본총액 112,565억 원의 0.8배 수준(2006년 감사보고서 기준)이었으며, 2006.12.29일 변경·시행된 회계기준적용(종속회사, 지분법적용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회계처리)따라 이연법인세를 감안하여 재작성된 2006.12.31일 기준 대차대조표(2007년 감사보고서의 전기 기재사항)에 의하더라도 부채총액은 101,289백만 원으로, 자본총액 101,509백만 원 대비 약 1.0배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는 2007.12.31일 현재 부채총액이 163,509백만 원으로서 자본총액 22,899백만 원의 7.14배에 달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여 법제8조의2제2항제1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심인 주식회사 이수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회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실적악화로 인하여 자본총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채총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2009.12.31일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서비스

1. 20

#### 대구도시가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8구사2009)

##### ■ 위반내용

피심인은 대구지역의 도시가스 독점공급업자로서 1983년 최초로 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그 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가구 980,019호 중 67%에 해당하는 654,256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2% 내지 3%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피심인은 2006. 8. 1.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부대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1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 없는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이하 '가스사용자시설공사'라 한다)의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준수토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1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시가스공급 관련 부대업무인 가스 정기안전점검, 가스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금 관리, 계량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의 위탁업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관련 가스사용자시설공사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이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스사용자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준수토록 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심인은 2005. 7. 1. 자회사 계열 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에게 신규 7개 지역의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탁한 후 가스사용자시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열 서비스센터 중 하나인 (주)알파서비스로 하여금 가스사용자시설 공사비를 전면 재 산정토록 하여 2006. 8. 1.부터 계열 3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재산정된 공사비의 시행에 앞서 2006. 7월 중 기존 10개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새로운 공사비 기준을 통보하면서 서비스센터간 공사비가 다를 경우 공사비 차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제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정된 공사비를 준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실상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피심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공사비를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과 위탁거래관계에 있는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지시나 방침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이 서비스센터 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사용자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이면 누구나 지역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고, 공사비는 시공하는 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전략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에서 피심인이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이 하여금 자신이 정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한 행위는 독립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 1)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경영간섭)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 ■ 조치내용

피심인은 가스사용고지서 송달,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자신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별 서비스센터 사업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탁업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의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이들 사업자들이 하여금 준수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과 위탁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지역 서비스센터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유통(도소매)

### 2. 10

훈마골프왕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8비경2078)

###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6. 4월 이후 약 120여개의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인터넷 판매 가격 미표시 및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공급의 중단 및 거래해지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인터넷 판매가격 미표시 의무는 실제 피심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가격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피심인은 소매가와는 별도로 최저가를 대리점에 통보하고 있고, 최저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06. 5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피심인의 모니터링 목적이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2006. 5월에 작성된 “모니터링 요원 교육사항”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피심인은 통상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중단사유로 “가격미준수”, “광고매체 광고시 소비자가격 표시” 등을 2008년에 작성한 “판매 장려금 지급의 건”이라는 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피심인은 2006. 11. 6. 최저정찰가를 어긴 판매 대리점 (주)한타로부터 향후 절대 최저정찰가를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피심인은 가격표시 등이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2007. 7. 1.부로 ‘판매가격/표시가격’으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위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거래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대리점에 통지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에 대하여 골프채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에서 보듯이 소매가와와는 별도로 최저가를 대리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둘째, 피심인은 위에서 보듯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물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동 계약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가격표시제 관련 공문시행, 위반업체로부터의 서약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심인의 동의 없이 다른 대리점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속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의 선택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과 거래할 경우 계약서에 물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여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 둘째, 피심인은 골프채 시장에서 4위 사업자로서 2007년 매출액이 전년(186억 원)대비 95억 원 가량 증가한 281억 원에 달하고, 상위 20개 업체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7년 8.0%로서 전년(6.4%)대비 1.6%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시장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피심인이 도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로부터 피심인과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상품이 들어가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보다 많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자기가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서약서를 수령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서상의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 : 제조 · 유통

### 2. 22

(주)에이스침대 및 (주)시몬스침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8시장1313)

### ■ 위반내용

피심인들은 2005년 5월 경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 7. 1.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에이스침대 대표이사 안○○는 2005. 5. 26. 에이스침대 임직원 14명, 대리점 대표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2005년 1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workshop」에서 가격표시제 운영 및 벌칙관련 사항을 논의하면서 “시몬스 역시 7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몬스의 경우 BOX 매장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으며 그로 인해 백화점 매장만 100%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스와 시몬스는 백화점 매장별로 서로 신고제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2005. 7. 1.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에이스침대는 에이스베드마스터를 통하여 2006. 1. 31. 및 같은 해 2. 1. 서울시 소재 롯데백화점(6개), 현대백화점(5개)의 시몬스침대 매장에 대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 에이스베드마스터는 시몬스침대 매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에이스와 함께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에 대한 판매자의 SALES TALK가 에이스침대 교육 당시 배웠던 내용과 같다” 등의 내용을 기록한 사실이 있다. 2006. 6. 13.~14. 에이스침대 임직원 21명, 대리점 대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workshop」에서 대리점 루체코리아의 황○○이 “지속적인 시몬스와의 가격표시제 공동 진행”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시몬스침대는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판매가격표” 및 “시몬스침대는 판매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관련 POP를 제작하여 대리점(190개) 및 백화점(43개)에 배포하였으며, 지역 영업담당들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전표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격표시제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가격고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에이스침대의 가격표시제 관련 내부자료 및 대표이사의 발언 등은 피심인들 간의 합의없이 일방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닌 점, 피심인들이 동일시점인 2005. 7. 1.부터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책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2005년 기준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판매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3.9%이다. 또한, 에이스침대가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 의뢰하여 조사한 침대 브랜드 선호도에서 피심인들의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유명 침대브랜드 1위,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판매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합의하여 시행한 행위는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브랜드내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침대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들은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는 4,195백만 원, 주식회사 시몬스침대는 1,033백만 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5

### 문경시 6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8구사3037)

#### ■ 위반내용

피심인들은 문경시 중심지역(구 점촌시 내) 및 인접 면지역(이하 “문경시 중심지역”이라 한다)에 LP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상의 16개 사업자들로서 2007년 10월초부터 문경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해 오던 중 2007.10.31. 점촌가스 사무실(문경시 모전동 소재)에서 점촌가스 대표 등 14개 사업자 대표들이 모여 16개 사업자를 동업형태로 6개 사업자로 축소하고 자칭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2007.11.1.부터 LP가스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위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문경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 사업자 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바, 동 협약서에는 참여사업자 인적사항, 수익분배방법, 차량관리 및 인원배치, 상호의 통제합 방법 및 이탈시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2007년 12월부터 정액급여 형태의 기본급과 근무수당으로 참여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공동판매 직전 1년 간 업체 평균물량(13t)을 기준으로 평균물량 초과업체들에게 업체별 보상금을 결정하여 전체 보상금 중 각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보상금(배당금)을 매일 지급하고 있다. 2007.11~2008.10 기간 중 피심인의 평균매입단가(1269.5원/kg)는 경북지역의 평균판매단가(1290.9원/kg)보다 낮으나, 피심인의 평균판매단가(1783.1원/kg)는 경북지역의 평균판매단가(1781.1원/kg)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피심인들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이 2007.10.31. 최종모임을 개최하여 16개 사업자를 6개 사업자로 통합하여 2007.11.1.부터 LP가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협약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위 행위사실에 적시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피심인들 간에 영업의 주요 부분인 판매 및 수익분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LP가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한 행위는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한 행위로서 문경시 중심지역에 LP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공동판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간의 경쟁이 소멸된 점, 해당지역 소비자의 LP가스 판매점 선택권이 제한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경시 중심지역 LP가스판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들은 영업의 주요부분인 LP가스판매 및 수익분배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2007.10.31.자 합의사항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앞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함으로써 경북 문경시 지역 LP가스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들은 위의 이행결과를 이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유통(도소매)

2. 22

에이스침대 강동지역협의회 등(21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07독감0629~0649)

### ■ 위반내용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2005. 5. 26.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에서 에이스침대가 주최하여 개최된 제1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에서 에이스침대 직원 14명, 대리점대표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표시제 실시를 결의하고, 대리점 사업자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할인 판매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지역대리점 50만 원(백화점 입점 대리점 100만 원), 3회 적발 시 대리점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회원사들에게 가격표시제 운영과 벌칙안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지역대리점은 100만 원, 백화점매장은 150만 원의 공탁금을 징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에이스침대가 2005. 6.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리점에 전달한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한 가격표시제 위반사업자를 통지하면, 피심인 에이스침대 안양지역협의회, 에이스침대 강동지역협의회 및 에이스침대 백화점협의회는 구성사업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에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에 송금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중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구성사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협의회의 경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는 공탁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벌칙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공탁금 중 45백만 원을 에이스침대가 실시한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마련한 가격표시제 실시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구성사업자들에게 에이스침대가 정한 '침대판매 가격표' 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통지한 후,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징구하고, 이를 직접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격표시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의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인 피심인들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들은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주식회사 에이스침대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건설·제조

3. 5

###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8광사2496)

####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6. 11. 3.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33,0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719,6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5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알이엑스플랜에게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33,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기재 기산일부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알이엑스플랜에게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8,516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23

### (주)에스라이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8하개2231)

#### ■ 위반내용

피심인은 성진기업 등 2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류 제조 위탁을 함에 있어, 위탁일, 품명, 수량, 납기 등은 별도의 발주서에 의하고 납품단가 등 하도급대금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기본계약서는 교부하였으나,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상품 건별 발주시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피심인의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피심인은 발주서를 교부하기 전에 협력업체와 예상단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원가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예상 하도급대금을 발주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더라도 이미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이 정한 사전원가를 토대로 발주서에 예상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단가 조정시 하도급대금을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서면 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성진기업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류 등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제조

3. 6.

(주)선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8전사2471)

###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8. 25. 부터 지역 일간지 및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제조한 “O2린” 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가)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나) “21ppm의 산소가 녹아 있는 O2린 1병을 마셨을 때 다른 소주에 비해 평균 1시간 정도 빨리 깨는 것으로 확인(관련 논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9월호 게재 예정)” (다) “3배 많은 산소가 녹아 있어 1시간 먼저 깨는 특허받은 소주 3O21h”. 피심인은 2008. 8. 25.부터 자신의 소주 ‘O2린’ 제품 상표에 “1시간 먼저 깨는 O2린”, “3O21h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소주”, “3배 많은 산소가 녹아 있어 1시간 먼저 깨는 특허받은 소주 3O21h”라고 표시하였다.

피심인의 소주에 용존해 있는 산소량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소주에 용존해 있는 산소량보다 많아 이로 인해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고, 또한 순산소가 함유된 희석식 소주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사실

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므로 허위·과장성이 인정된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O2린 소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소주에 녹아 있는 산소량 보다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고, 이것으로 공신력 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소량이 많아 빨리 깨고, 이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은 대부분 음주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후유증을 느끼는 일반 소비자가 소주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가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소주를 선택·구매할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O2린 소주를 선택·구매하도록 유인한 효과가 있으므로 소주판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신의 O2린 소주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의 소주에 비해 자신의 소주에 용존해 있는 산소량이 소비자 음주시점에 3배가 더 많아 1시간 먼저 깨고, 그러한 효능적인 면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27

###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9서소0478)

#### ■ 위반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8초재 21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문(2009. 2. 13. 이하 '대전고법 결정문'이라 한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황○○은 피심인 케이티앤지의 직원(브랜드실 부장)으로 대전고법 결정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담배제품인 "ESSE순(純)"(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생산·판매하면서, 이 사건 담뱃갑 중 백판지에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로 만든 우리 자연의 1mg입니다"라고 표시하였고, 2006. 4. 18.자 발행 '시사저널' 제860호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대나무 숯 필터가 걸러내는 깨끗함과 황토종이가 감싸주는 원적외선의 조화 1mg 우리 자연의 힘!"이라고 광고하였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담배를 싸고 있는 포갑지와 은박지에 황토를 발라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부드럽고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황토는 벌집모양의 복층구조를 통해 원적외선 방사량이 탁월해 심신 안정, 신체에너지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전자파 차단, 냄새제거,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 "대나무 숯의 표면적은 일반참숯에 비해 2~4배 넓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어 연기 중 유해물질 여과와 흡착능력이 일반참숯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 및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의 개념에 한 걸음



##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더 다가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피심인 황○○은 피심인 케이티앤지의 브랜드실 부장으로 위와 같은 표시·광고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이다.

위 대전고법 결정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이 사건 담배의 박엽지와 백판지에만 황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백판지 및 2006. 4. 18.자 발행 ‘시사저널’ 제860호에 황토가 이 사건 담배의 담배필터나 켈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고,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의 효능이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일반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담배에 해독작용, 냄새제거효과 및 전자파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위와 같은 일시 경 피심인 황○○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대전고법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공소 제기 결정이유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위의 표시·광고행위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 케이티앤지 및 피심인 황○○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및 피심인 황○○을 각각 고발한다.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 유통(도소매)

2. 25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8전사1878)

### ■ 위반내용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가 2008. 11. 17.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확인서와 후원수당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6. 2월경 소속 다단계판매원 49,097명(2005. 12월말 기준) 중 131명의 동의를 얻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 6. 1.부터 적용하면서, 그 변경내용을 적용일부터 3월 이전인 2006. 3. 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후원수당 산정의 변경사유와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누락시킨 채 새로운 지급기준의 적용일과 변경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만을 2006. 2. 28.부터 3개월 동안 게시하였다.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과 함께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가 2008.11.17. 제출한 2007년도 후원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까지 기간 중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하 “가격합계액”이라 한다.) 81,422백만 원의 46.9%에 해당하는 38,257백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총액은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박○○은 2006. 7. 3.부터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가격합계액의 35% 이내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대하여는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1항,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과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과징금 130백만 원과 과태료 1백만 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 월드종합라이센스(주)와 피심인 박○○을 고발한다.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서비스

### 2. 23.

(주)위드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8서제2257)

### ■ 위반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위드코비는 2003년 코 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전문한의원으로 출발하여 전국에 '코비한의원'과 '리본웰빙센터'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년 9월 현재 '코비한의원' 26개 및 '리본웰빙센터' 2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08년 9월말 현재 28개의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컨설팅비, 교육비, 홍보비, 업무지원비, 장비시스템비, 초도물품비, 물품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

피심인은 이○○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8. '리본웰빙센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008. 3. 31.과 같은 해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행위는 이○○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2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해 3. 31.과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맹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이○○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인 2008. 3. 28. 이○○와 '리본웰빙센터' 가



##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1.과 같은 해 4. 17.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이○○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5. 6.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이○○는 2008. 5. 6.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서' 를, 같은 해 5. 30. 재통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피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은 같은 해 5. 19. 역시 내용증명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수령한 행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20,000,000원을 이○○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 유통(도소매)

### 1. 22

(주)쓰리씨스포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8서소2163)

###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2. 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www.3csports.net)을 통하여 김정훈 외 5인이 청약한 미국의 프로야구용 모자, 의류 등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주문한 재화 등을 미국의 공급업자에게 구매요청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정확한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인들이 청약한 시점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재화 등의 공급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신고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고인들은 재화 등을 청약한 날부터 6주에서 12주가 경과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지연에 이유로 대금반환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재화 등의 공급지연에 대한 사실을 신고인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은 재화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발송 혹은 유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인들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이 이 사건 신고인들에게 재화 등의 공급지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심인은 김○○ 외 3인의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 등의 배송지연에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며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도록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심인의 경우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 등을 배송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인들이 재화 등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들로부터 대금환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내지 86일 지연하여 대금을 환급하였으며,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이 대금환급의 지연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모자,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모자, 의류 등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의 정당한 대금환급 요구에 대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전체화면 크기의 1/4 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 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